

“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”으로, “직영점”은 “영업소”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7. 3.>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9조의7(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)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(이하 “적재물배상보험등”이라 한다)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[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운송주선사업자”라 한다)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]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13., 2018. 7. 3., 2020. 6. 16.>

1. 운송사업자: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
2. 운송주선사업자: 각 사업자별로 가입
3. 운송가맹사업자: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,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9조의8(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·해지할 수 있는 사유) 법 제37조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「상법」 제650조제1항·제2항,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9조의9(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)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28., 2024. 12. 17.>

1.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
2.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
3.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
4.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에 관한 분쟁
5. 그 밖에 분쟁의 성격·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
 2.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3.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
 4.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-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-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 다만, 분쟁의 성격·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6. 11., 2016. 6. 21.>

[본조신설 2011. 12. 13.]

[제9조의10에서 이동,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3으로 이동 <2015. 12. 30.>]